##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22-110관련 번 호 발의년월일 : 2022. 12. .

발 의 자 : 최은하 의원 외 1명

## 1. 수정이유

체육계의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 제2조 제목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을 "(구청장의 책무)"로 수정함.
- 나.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 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제목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2조 <u>(구청장의 책무)</u> <u>①</u> (현행
(생 략)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구청장은 성폭력 등 체육계
			의 폭력 및 인권침해로부터 선
			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